

상담 제도

범죄피해로 인해 무거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,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음과 같은 심신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이것은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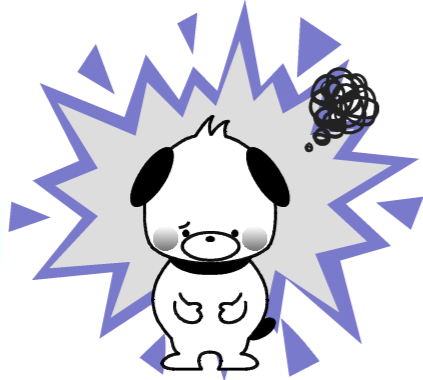
심리적 반응

공포감 · 자책감
불안감 · 무기력
절망감 · 고독감
소외감 · 분노
복수심



신체적 반응

긴장 · 두근거림
설사 · 구토
식욕 부진
불면증 · 악몽



감각적 반응

감각 · 감정의 마비
현실이라는 감각이 없다
기억력 · 판단력의 저하

이러한 증상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회복되지만, 회복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.

그 중에는 다양한 정신 질환 (PTSD 등) 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경찰에서는 임상 심리사 자격을 가진 심리 상담자를 상담 전문원으로 배치하고, 정신과 의사와 연계하는 등 피해자 등의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【 문의처 】

경찰본부 경무부 경무과 범죄피해자지원실
Tel 022 - 221 - 7171 (내선:2693)

상담 창구

● 경찰상담 전용전화

범죄피해의 미연의 방지, 생활안전의 불안이나 고민 등, 각종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.

9110 및 022 - 266 - 9110

● 성범죄피해 상담전화

8103

● 미야기 외국인 상담센터

미야기현에서는 외국 국적 분들의 다양한 상담에 대해 각종 외국어로 대응하는 상담 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. 3자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, 다른 상담창구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.

상담전화 022 - 275 - 9990

〔 해당 언어 : 영어 · 중국어 · 한국어 · 베트남어
타갈로그어 · 인도네시아어 · 네팔어
포르투갈어 등 〕

● 일본사법 지원센터 (법 테라스)

법 테라스에서는 일본의 법률제도나 상담창구에 대해서 각종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각종 외국어 정보제공 서비스 0570 - 078377

〔 해당 언어 : 영어 · 중국어 · 한국어 · 스페인어
포르투갈어 · 베트남어 · 타갈로그어 〕

● 미야기 피해자지원 센터

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로서,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범죄 피해 등에 관한 전화 상담 · 면접 상담
- 병원, 경찰, 법원 등에 동행 지원

022 - 301 - 7830 또는
0570 - 783554 (전국 공통 안내 다이얼)

당신의 담당자

.....경찰서.....과

이름.....

전화.....(내선 :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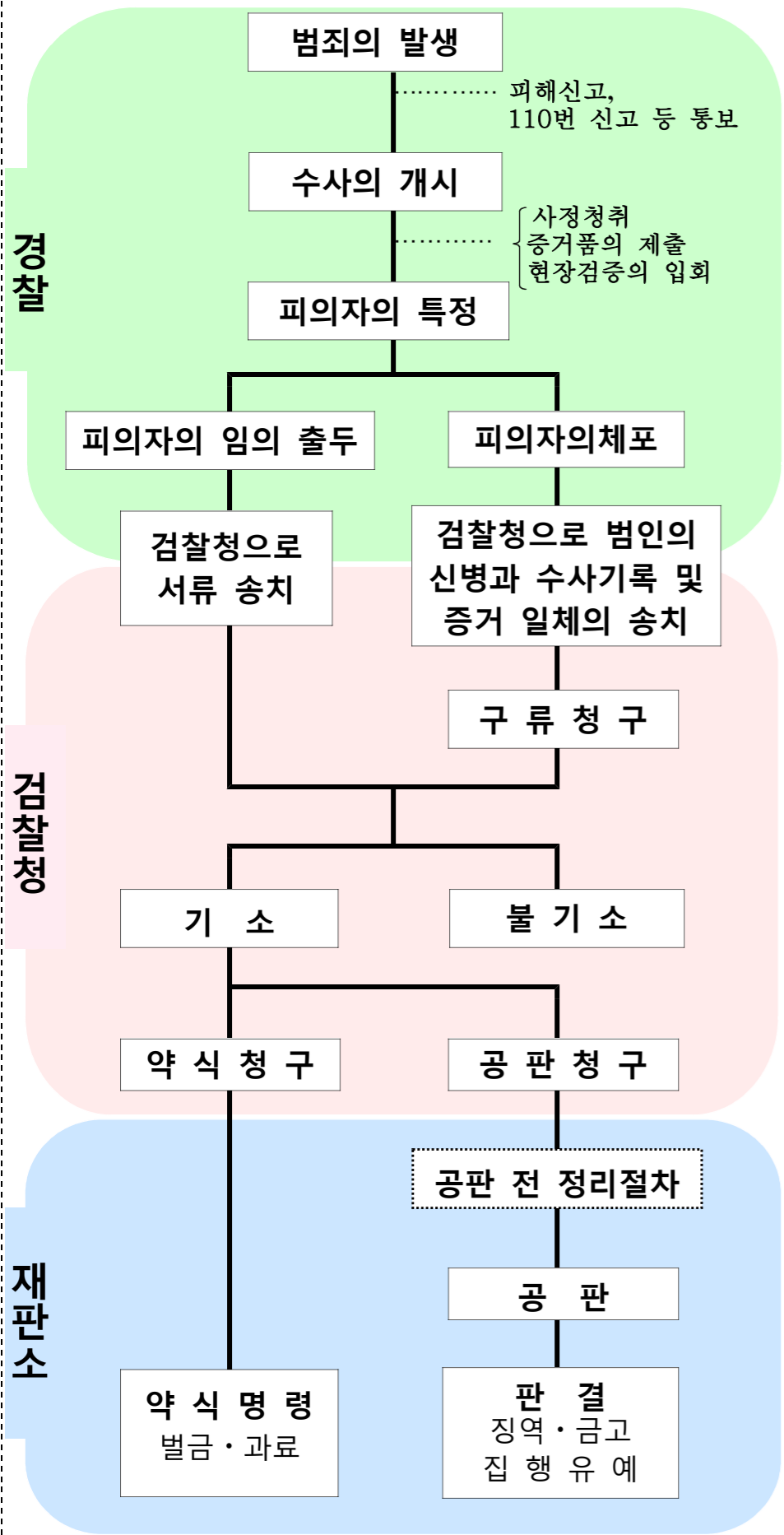
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

이 전단지는 피해자 분들에게

- *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며, 범인은 어떤 절차로 처벌되는지,
 - *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,
- 등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.

일본의 형사절차의 개요

범인과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, 범인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합니다.
이것은 크게 수사, 기소, 공판의 3단계로 나뉘며, 경찰, 검찰, 재판소 등 기관이 관계합니다.



경찰의 지원 제도 등



수사에 있어서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도 있겠지만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기 위해서,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도 꼭 수사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① 지정피해자지원요원 제도

경찰에는 수사원과는 별도로 지정된 경찰직원이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지정피해자지원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지원피해자지원요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
- 병원의 수배와 동행, 현장 검증의 입회 등의 도움
- 형사절차와 피해자를 위한 제도의 설명
- 사정 청취와 피해자 조서의 작성 또는 그 보조
- 걱정거리의 상담수리, 카운셀링 제도 및 각종 상담기관의 소개
- 피해자 등의 자택 등으로의 송영

【 문의처 】 사건담당 경찰서

② 의료비용 등의 공비부담 제도

다음과 같은 의료비용 등의 경비를 공적비용으로 부담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.

- 가족이 사망하신 분
검안서류, 유체 반송료 및 수복료의 일부
- 상해 등을 당하신 분
초진료, 진단서류, 성감염증 검사료 등

※ 일정한 조건에 의해 경비의 공비부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③ 범죄피해급부 제도

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일본국적을 가진 분, 또는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.

- 유족급부금 ..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
- 중상병급부금... 신체에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(요양1개월 이상 또한 입원3일이상) 에 걸린 경우에 지급
- 장애급부금 ... 피해를 당한 본인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급

【 문의처 】 미야기현 경찰본부범죄피해자지원실
(Tel 022 - 221 - 7171)

검찰청 지원 제도 등

① 피해자 지원담당관 제도

검찰청에는 피해자 등의 부담이나 불안을 가능한 완화시키기 위해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계하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

피해자 지원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
- 상담 대응, 법정 안내·동반
- 사건기록 열람, 증거품 반환 등의 각종 절차 보조
- 피해자 등의 상황에 따른 정신면, 생활면, 경제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 소개

②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도

검찰청에서는 피해자 등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, 형사재판 결과, 범인의 구금 중의 교도소에서의 처우 상황, 교도소의 출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※ 통지는 전화나 문서 우송 등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.

③ 피해자 핫라인

피해자가 편하게 문의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전화로써 피해자 핫라인을 전국 지방 검찰청 등에 마련하고 있습니다.

센다이지방검찰청 피해자 핫라인 (Tel 022 - 222 - 6159)

재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

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피해자 등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재판에 있어서, 피해자 등을 배려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- 증인 동반
- 방청인 등에게 보이지 않도록 증인의 차폐
- 비디오 모니터를 통한 증언
- 사건 기록의 열람, 복사
-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 보호
- 의견 진술
- 공판의 우선 방청
- 형사 화해
- 모두진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수령

○ 피해자 참가 제도

‘피해자 참가인’으로서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 질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○ 피해자 참가여비 등 지급 제도

피해자 참가 제도를 이용해서 형사 재판에 출석한 분에게 청구에 의한 그 여비 등을 국가가 지급하겠습니다.

○ 피해자 참가인을 위한 국선번호 제도

피해자 참가인은 공판 출석이나 피고인 질문 등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. 재력이 200만엔에 미치지 못할 때는 피해자 참가 변호사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○ 손해배상명령 제도

형사 재판의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의거하여 그 범죄에 의해서 생긴 손해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